

2021. 5. 12. ~ 5. 17.
- 6일간 -

제32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125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26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27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28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29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30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31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32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3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5.17.	원안가결
2134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2135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1.5.17.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심민섭 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2018. 12. 12.)에서 결정한 장성군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 사항 반영을 위한 별표 신설(안 제3조제2항)
 - ※ 2020 ~ 2022년도 장성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별표 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차상현 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예산낭비 공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4조)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정의 사항 보완 (안 제2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의 추가
- 연구자 선정 시 위원회심의 의무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 심의위원의 기피제 신설 (안 제8조)
- 연구용역 검수 및 제재방안 마련 (안 제15조의2, 제17조)
- 연구결과 공개 확대 (안 제18조)
 -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의무화
 -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기재 의무화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위명 정비
 - 담당 ⇒ 팀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장성군수(총무과)
- 제안이유
 - 장성군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사업(결혼축하금 지원)」 과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의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함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결혼축하금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별표)

구분	현행	개정
지원 내용	부부당 300만원(3회 분할) 혼인관계사실 등 확인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부부당 400만원(3회 분할) 1회차: 최초 신청시 200만원 2회차: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3회차: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원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전 들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서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들 모두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3.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기준(별표)

구분	현행	개정
지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 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장성군 거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김미순의원 발의
-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처우개선사업 추진 및 보호(안 제7조 ~8조)
 - 처우개선 :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및 교육 등
 - 보호 :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안 제9조 ~ 제11조)
 - 군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운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
- 제안이유
 -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가 국가책임 강화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근거 마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 마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예산지원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 ~ 제1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

현 행

구분	납기	납세의무자 (5개)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m ² 당 250원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액 × 0.5%

개 정

구분	납기	납세의무자 (3개)	세율체계
개인분	8월	개인	<좌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① 개인 사업주(5만원) ② 법인 사업주(5~20만원) 연면적 330m ² 초과 세액 + m ² 당 250원
종업원분	<좌동>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개정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금고 약정기간 “3년” 을 “4년” 으로 변경(안 제4조)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안 제12조제7항 신설)
 - 협력사업비가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 “통보” 를 “통지” 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제1항)
-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
- 제안이유
- 감면대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분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자
 - 향후,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법 개정이 시행되는 경우 감면 소급 적용
- 감면 세목 및 내용 : 건축물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과세기준일 포함)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2021년 7월에 부과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아래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 감면율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 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 후 이를 환급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장성군수(평생교육센터)

▪ 제안이유

- 장성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 협의회 설치 목적
- 기능(안 제3조)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 구성 및 임기(안 제4조~제5조)
 -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 의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7조~제8조)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1. 5. 4.
- 제안자 : 김희식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의 우리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우리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